

# 絶影島 租借地 問題에 관한 日本 外交文書抄

本資料는 日本 外務省이 편찬한 日本外交文書 第31卷 第1册에 收錄된 것을 번역한 것으로, 絶影島 租借地 問題에 관해서 1898. 9 兩年間 在釜山 日本領事와 日本 外務省, 또는 在京 日本公使 간에 往復된 外交文書(主로 電文)이다 絶影島 租借問題에 관한 日本側의 가장 완벽한 資料이다.

## 絶影島의 露國 石炭庫敷地에 關한 具申의 件

機密第1號

1月31日 接受

本月 21日 午前 9時 露國 軍艦 시우치(シウチ)號가 當港에 入港하여 그 動靜을 注意하고 있는 중, 同日 午後 2時 頃 士官 2名, 水兵 20餘名이 絶影島에 上陸하여 松·杉 等の 苗木 數10本을 揚陸하고 그대로 歸艦하였음. 이는 아마 石炭庫 敷地의 境界에 침으려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同日 午後 3時 頃 艦長 및 少佐 1名이 監理署를 訪問했으나 監理는 現下 東萊에 出張중이기 때문에 곧 歸艦하였음. 그 뒤 一昨 24日 監理가 東萊로부터 歸釜하여 午後 露艦長과 面會한 바이므로 同夜 川上書記生을 監理署에 파견하여 그 狀況을 探知케 한 바, 露艦長은 露國이 石炭庫 敷地를 絶影島에 借入하는 것은 이미 韓國政府의 承諾을 얻었기 때문에 그 撰定 地所에 대한 代價를 調査하여 줄 것을 要求했으나 監理는 本件에 대해서는 아직 外部로 부터 何等의 命令에 接하지 않았기 때문에 要求에 應하기 어렵다는 理由로써 이를 一蹴 하였다고 함. 또한 同 艦長은 아무면 炭庫 敷地의 境界를 限定하기 위해 먼저 絶影島에 揚陸한 松·杉의 植木을 시작한 뜻을 申述했으나 監理는 이에 대하여 外部의 어떤 命令이 있을 때까지는 이를 承認할 수 없다는 趣旨를 말하고 또한 艦長이 만약 이를 침더라도 監理가 承認한 바 아니기 때문에 他日 韓人이 이를 뽑아버리는 일이 있어도

監理는 그 責任을 질 수 없다고 答한 바 露艦長은 이에 이르러 말을 바꾸어 自己는 다시 在長崎 司令長官의 손을 거쳐 京城의 露國公使로부터 外部에 대하여 至急히 監理에게 敷地認許의 命을 내리도록 하겠으니 監理로서도 電報로써 問談할 것을 要求함으로써 監理는 이를 承諾하고 外部에 打電했다고 함,

前述과 같은 次第에 있는 바, 만약 外部의 回電으로 右 敷地 貸渡를 認許할 때에는 露艦은 즉시 炭庫 設置에 관한 諸般 工事に 着手하리라고 생각됨, 특히 石炭庫 建設에 대해서는 材料는 勿論, 木工 等도 모두 日本人의 손을 빌려 供給하게 될 것 같은 바 이에 관계하는 日本人에 대해서 內密히 事情을 報告하도록 內命해 두었기 때문에 設計 其他 諸般事를 대개 豫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必要한 事項은 隨時報告할 것임. 그러나 하나 困難한 일은 右 豫定 露國 石炭庫敷地內의 日本人 所有의 地所를 處分하는 것인 바 該地所에 대해서는 露國이 간절히 이를 買得하기를 希望하여 京城露國公使로부터 도 我加藤辨理公使에게 때때로 그 뜻을 申込한 일이 있기 때문에 加藤公使로부터는 客月 25日附 電報로써 別紙와 같이 알려오고 있음. 卽 別紙와 같이 露公使가 我公使에게 開陣하였음.

비추어 보건계, 露艦入港以來 同艦長으로부터 지금 本官에게 何等의 交涉이 없는 것으로 보면 露公使의 말과 같이 日本人 所有의 地所에 관계 없이 그 周圍에 敷地를 取할 決心인지도 알 수 없음. 특히 日本人 所有의 地所는 海岸에 通해 있기 때문에 대단한 不便을 느끼지는 않으나 어쨌던 價格을 損減하는 點에 있어서는 實로 露國公使의 말과 같이 될 것이 必然의임 더욱이 一方에서는 露國이 多少 高價라도 購買하려는 展望이 있는 지금 右 地 所有者들이 賣却을 希望하는 것은 一私人으로서 不得已한 일이며 無償으로써 前記한 損失을 입게 하는 것은 理에 있어서 도저히 맞지 않는 第次에 있음. 따라서 斷然 右 地所가 露國 손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임으로 官金으로써 이를 購入하는 것 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함. 그리하여 官金支出의 件에 대해서는 客月 7日附 機密第36號로써 伊集院領事부터 意見을 具申하여 請願한 바도 있는 바, 昨日에도 地所 所有者의

1人인 中野許太郎이란 者가 當館에 出頭하여 좋은 相對가 있을 때에는 時機를 노치지 않고 賣放하고자 하는 뜻을 申述하였음. 他所有者도 다 이와 같은 상태일 것으로 생각함. 더욱이 右 中野로서도 自進하여 露國人에게는 賣渡하는 등은 하지 않겠다고 誓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申述은 官에서 相當한 價格으로 買入하여 달라는 諷刺가 아닌가도 생각되는 바 이것 亦是 至當한 일인 것임에 따라 此際에 어떻게하여 相當의 金額 支出의 方途가 세워졌으면 좋겠음, 客月 7日附 機密第36號信으로서 土地의 價格을 1坪當 1圓內外로 見積한 것은 實로 正當한 評價이며 또한 所有者에 대한 至當한 報酬인 바, 더욱 事理를 辯明하여 右 所有者에게 勸誘하면 或은 더 低廉 低價로써 滿足 될 수 있으리라고도 思考함. 그러나 右 所有者도 土地의 買入代金에 改良의 買用 등이 것들려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價格을 低減시켜도 1坪當 50錢以下까지 引下시킨다는 것은 人情上 곤란한 일임으로 右最低額 즉 1坪當 50錢으로 見積하여 總計 約 4千圓 정도 얻을수 있으면 매우 좋겠다고 생각함. 만약 右 官金支出이 전혀 여의치 못한 次第이면 不得已 이를 放任하여 右地所處分은 土地所有者의 意見에 따르는 수 밖에 없는데 이를 放任한다면 右 土地는 露國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免할 수 없으며, 露國이 買得하는 것을 免할 수 없는 것으로 되면 露國이 그 土地 周圍에 炭庫의 設計 등을 끝낸 後면 그들에게 그 氣味를 알리게 되어 값을 내린 결과 本邦人으로서 意外의 損을 입게하는 結果를 生기게 하므로써 앞 서러면 사람을 制하라는 俗談에 따라 지금의 行際에 있어서 速히 이의 處分 方法을 決定하여 官이 買上하지 않으면 露人에 대해서 相當히 高價로 賣付하도록 하는것이 좋겠음, 畢竟 本件에 대한 處分方法은 官이 買上하든지, 露國에 대해서 可及의 高價로 賣付하여 我邦人의 利益을 얻게하던지의 길을 택할 수 밖에 方法이 없다고 思考함. 以上 露繼 시우치號의 動靜 具報 및 絶影島의 豫定 露國 炭庫敷地內인 日本人 所有地 處分法에 관한 芻見을 開陳하여 이에 高裁를 바랍.

敬具

明治31年 1月 25日

在釜山領事館事務代理  
領事官補 中村 巍 (印)  
外務大臣男爵 西 德二郎 殿

絶影島 露國炭庫敷地 買收 및 邦人 所有地에  
關한 請訓의 件

機密 第2號

2月1日 接受

當港 絶影島에 있어서의 露國 石炭庫 設置에 관한 件에 대하여 一昨 25日附 機密第1號로써 詳報해 둔바, 京城外部로부터는 아직 伺等の '回答을 當 監理에게 주지 않음으로써 露艦도 工事 着手을 保留하고 있는 모양 같으나 每日 小數의 水兵이 同島에 上陸하여 測量等을 行하고 있어 此際 日本人 所有의 地所에 대해서 異日의 紛議를 避하기 위해서 昨日 그 境界에 樺杭을 세우게 하여 「日本人伺某所有地」라고 쓴 標札을 세워두게 했음. 그런데 右 露艦은 自己가 使用하는 露語通辯 長崎市 紀平合資會社員 中村 七郎이란 者를 行人시켜 昨夕부터 계속하여 右 地所 買收策을 請求하여 種種의 奸策을 세우고 있는 모양 같은 바, 地所 所有者에 向해서는 미리 內命해 둔 바도 있어 그가 말하는 것은 곧 本官의 귀에 達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艦長의 말이라고 하여 지금에 이를 팔지 않으면 他日 官에 沒收된다던가 또는 그 周圖를 둘러싸 炭庫를 設置하면 他日 右 地所는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된다는 等 笑止千萬한 말을 하고 또한 때로는 한쪽의 地主에 대해서는 他 地主는 이미 承諾했으니 당신도 承諾하기 바란다 僞言으로써 誘惑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右 地主 等은 조금도 屈하지 않고 일일이 그의 申込을 一蹴하고 그 奸計에 빠질 憂慮가 없도록 하고 있는바 그 柔順하고 官의 命命을 받드는 것 實로 奇特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右 地主 等에 대해서는 他日 假令 露國 手中에 들어가게 되든 官이 買入하게 되든 받드시 右 地所 相當의 報償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니 安心하고 있으라고 말해 두었음, 就而 此際에 留意를 위해서 25日附 機密第1號에 대한 閣下의 高見을 至急히 豫知하고자 하는 바 同 公信에 대해서는 아무면

電報로써 訓令을 주시옵기 바람.

右及 稟請候 敬具

明治 31年 1月 27日

在釜山領事館事務代理

領事官補 中村 巍 (印)

外務大臣男爵 西 德二郎 殿

**露艦 시우치號 邦人 所有地所 內에 無斷히**

**樹木을 植付한 데 관한 露艦에 대한 交涉의 件**

機密 第3號

當港 絕影島 露國 石炭庫 豫定敷地 內에 있는 日本人 所有의 地所에 관하여 異日의 紛議를 避하기 위해서 그 境界에 棒杭을 세우게 한 趣旨를 一昨 27日附 機密第2號로써 具報했던 바, 右 棒杭을 建設할 때 荒木嘉作 所有의 地面 內에 先般 陸揚한 松杉 等の 苗木을 無斷히 植付해 있는 것을 發見하므로써 同 所有主로 부터 이것을 收去할 것을 要求했으나 言을 左右로 托하여 承諾의 기미가 없음에 따라 27日 午後 荒木은 當館에 出頭하여 이와같은 經위를 陳述하였음, 따라서 本官은 昨 28日 午前 爲念 絕影島에 出張하여 그 實況을 臨檢한 바 과연 荒木이 말한 바와 같이 相違 없음으로써 本官은 이러한 不法行爲을 不問에 부치고 말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同日 午後 露艦 시우치號를 訪問하여 艦長에 面談하여 이를 詰問한 바, 艦長은 이것은 全히 日本人 所有地인 줄 몰고 植付한 것이나 자주 이것을 移植할 때는 植物을 枯死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當分間 이것을 取去하지 않고 일이 끝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至極히 穩健한 人事를 함에 따라, 些小한 일에 角立하는 處置를 하여 함부로 그의 惡感情을 싸는 것은 得策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本官은 이에 答하여 艦長으로부터 이 地所 所有의 日本人에 대하여 樹木 植付에 使用하고 있는 地面만 어느 短期間 동안 借用해 둘 것을 말하고, 本人으로부터 一應

의 承諾을 얻어 들 것과 또한 絶影島の 日本人 所有地의 地所內에는 將來  
何等의 設備도 하지 않을 것을 要求한 바 艦長은 즉시 이것을 承諾하고  
또한 右 樹木 植付를 위해 異日 土地에 損害를 일으키면 賠償의 責任을  
지겠다고까지 申述했음, 따라서 本官은 歸路 荒木을 呼出하여 露艦으로부터  
依賴가 있을 때는 現在 植木을 한 地面만 短少한 期間을 정하여 이를  
貸與하도록 勸告해 두었던 바 露艦으로부터는 通辨 中村七郎을 통해서 本  
日으로써 右 地所 借入件을 荒木에게 申込하여, 荒木은 이에 대하여 2個月  
간 貸與하기로 承諾했다고 함.

右及報告함            敬具

明治 31年 1月 29日

在釜山領事館事務代理

領事官補    中村 巍(印)

外務大臣 男爵        西 德二郎 殿

### 絶影島 借地에 관한 問答의 件

第10號

西 外務大臣

在京城 加藤辨理公使

絶影島 借地의 件에 관해서 昨年 9月 24日付 報告 以後의 模樣 如何至  
急 返電 있기 바람.

### 露國 絶影島 石炭庫 用地에 관한 報告의 件

1月 31日 午後9時 56分發 11時着

在京城 加藤公使

西 外務大臣

第12號

貴電 第10號의 件 依然 妨害의 手段을 取하고 있어 趙外務로부터 內外 人民을 相對하는 賣買이면 關係 없다고 露國公使에 答한 것으로 露國公使는 日本人 所有地 買收를 위해서 本官等의 盡力을 請하고 그 手段에 들어 가 露艦 씨우치號는 이것을 위해 目下 釜山에 碇泊함. 實은 韓政府도 지금의 撰定地를 貸與할 뜻이 없고, 昨日 外務部는 左의 訓電을 釜山 官吏에게 내렸음.

「露國 炭庫敷地는 人民 相對의 賣買를 許하지 말 것, 새로 다른 場所를 撰定시킬 것, 民有地에 속하는 것은 政府에서 買入하여 貸與하되 같이 日本 炭庫地의 例에 따를 것.」

卑見으로서는 他所에서 日本 炭庫 정도의 地區를 撰定하면 貸與할 수밖 에 없다고 생각함

더욱 意見을 請함.

## 露國의 絶影島 日本人 所有地 貸付에 關한 請訓의 件

(2月17日 午後 零時 40分發 電報寫)

中村 領事官補 發

京城 加藤公使 앞

絶影島의 荒木所有의 地所 內에 露艦이 樹木을 植付시킨 件에 關係서 荒木과 露船간에 2個月間 貸與할 相談이 된 것은 이미 報告했으나 同 地所에는 보리를 심었기 때문에 露艦으로부터 本官에 대해 樹木 植付 때문에 생긴 損害高 即收獲을 얻을 수 있는 穀物의 代價를 何時라도 支拂할 것이니 右 보리 收穫期까지 貸與하도록 助力을 바란다고 말해 恧에 따라 아무면 荒木에게 그 뜻을 말해 보겠다고 答해 놓았으나 露國이 現今의 選定地를 얻는 것은 今後에도 可能性이 없기 때문에 보리 收穫期까지 貸與해도 지장이 없다고 思考하나 荒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答도 할수 없으므로 爲念 閣下의 意見을 구하고저 하니 至急히 指導를 바람.

註, 右件에 관하여 即日 加藤公使로부터 관계없다는 返電이 있음.

## 日本人 荒木嘉作과 露艦 씨우치號 間的

### 荒木所有의 地所 貸與期間에 關한 件

附屬書 : 2月 19日 中村領事館 事務代理로부터 露艦長 앞 書翰寫 絶影島  
日本人 所有地에 關한 通知의 件

機密第6號

3月14日接受

絶影島에서 露艦 씨우치號가 日本人 所有의 地所內에 樹木을 植付한 件에 關해서 그 所有者 荒木嘉作과 露艦 間に 2個月間 貸與의 約束이 갖추어진 내용을 客月 29日附 機密第3號로써 報告한 바, 去 17日 露國土官 에 이치·라돈스치키(エイチ·ラドンスチキ)氏가 艦長의 命令이라고 하여 本官에게 面會를 求하고, 絶影島에서 露艦이 樹木을 植付한, 荒木氏 所有의 地所에 대해서는 이미 同氏로부터 2個月間 借受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同地所에는 보리를 심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損害高 即 同地所에서 收穫할 수 있는 보리의 代價를 同時에라도 支拂할 것임으로 보리의 收穫期 까지 이것을 貸與하도록 어떠한 助力을 바라고져 한다고 말하고, 同日에는 그대로 歸艦하였음. 그런데 右地所를 露國이 現今 炭庫 選定地를 獲得한다는 것이 將來에 있어서는 전혀 可能性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리 收穫期까지 貸與시켜도 별로 지장이 없다고 愚考하나 此際 荒木에 대해서는 어떠한 答도 하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爲念別紙와 같이 京城 加藤公使에게 電報하여 同公使의 御意見を 문의했던 바, 同公使로부터는 即日 보리 收穫期까지 貸與시켜도 지장 없을 것이라는 反電에 接함에 따라 翌 18日 荒木에 대해서 前記한 露國土官의 申込을 傳言했는데 同人은 右地所는 지금 당장에 사용할 特別한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니 收穫할 수 있는 보리의 代價만 受取할 수 있으면, 그 收穫期까지 貸與해도 조금도 장애가 없다고 함에 따라 그 代價를 말할 것을 일러 들었는데, 露艦이 樹木植付에 使用하고 있는 地所는 근근 2百坪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생기는 보리의 收



穫高는 지극히 僅少한 總數이나 右 植付로 인해서 그 近傍에 不少한 損害  
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損害高 總計를 보리 生産高 千石으로 見積하여 金  
額 30圓을 受取할 수 있으면 滿足하다고 말하고, 또한 보리의 收穫期는 7  
月中이라고 하기 때문에 同日 即時 別紙 乙號와 같이 露艦長에게 通知한  
바, 艦長은 午後 4時에 이르러 前 士官을 當館에 派遣하여 前顯의 金額을  
荒木에 支拂完了했음. 또한 本件에 관해서 露艦으로부터 荒木에 대한 證  
書を 提出시켜 둘 것을 欲하여 지난 17日 前 士官 來訪時 그 뜻을 말하고  
艦長 라지오매푸(ラヂヲメツフ)氏에 傳言케 했음. 라氏は 되돌려 同 士官  
으로 하여금 證書를 差入하는 件은 容易한 일이나 라氏は 좌우간 露西亞  
帝國軍艦長의 資格을 가지고 있는데 些末의 일에 대해서 公然히 契約書를  
差出하는 것은 매우 귀찮은 事情도 있고, 특히 라氏は 露帝國軍艦長  
의 名譽를 가지고 責任있는 日本 領事에게 依賴한 것인 바, 證書를 差出  
하지 않아도 決코 約束期限을 違反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을 證言하  
므로, 원래 이 言責에 違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確信하나 全혀 伺等의  
記錄도 없어서는 後日을 위해 좋지 않을 것이라고 思考하여 前顯別紙 乙  
號를 草하여 公然荒木の 貸與條件을 表明해 둔 次第임.  
爲念 此段 添申함 敬具.

明治 31年 2月 21日

在韓國釜山帝國領事館事務代理

領事官補 中村 巍

絶影島 露國 石炭庫用 選定地內 日本人

所有地 買收量 決定한 內容 通達의 件

(3月 22日 午後 3時 50分 發)

第5號

西 外務大臣

在釜山 中村領事館事務代理

絶影島에서의 露國 石炭庫用 選定地 內 本邦人 所有의 地所는 買收하기로 決定함. 그 實行方法은 追後 伊集院領事歸任 後에 計劃함.

絶影島 露國 石炭庫 用地內 日本人 所有地  
買收方法에 관한 內議의 件

明治 31年 4月 2日 發遣

機密送第7號

西 外務大臣

在釜山 伊集院領事 앞

絶影島의 露國 石炭庫用 選定地內 本邦人 所有地 買收方法에 關해 昨年 2月7日付 機密第36號로써 請訓한 次第인데, 그 후 또 中村領事館 事務代理로부터 申請이 있음에 따라 今般 드디어 貴官의 意見과 같이 買收하기로 決定하고 이를 위해 金4千圓을 陸軍省으로부터 支出하기로 되어 茲에 右 金額에 대한 爲替券 1枚를 及送하니 措置하시기 바라고, 더욱이 買收後에는 表面上 從來 所有者의 名義로 하고 貴官이 監督해 두었다가 他日 韓國과 露國간의 貸借事件 落着 뒤 右 所有者로부터 同省에 獻納하도록 計算하기를 바라는 陸軍大臣의 希望임에 따라 이를 잘 理解하고 取計할 것. 또한 더욱 本件에 대해서는 十分 愼重한 手段을 쓰서 露國의 感情을 害하지 않도록 깊이 注意할 것을 이에 內訓함.

따라서 本文의 土地 買收 後에는 그 面積 등을 詳記한 圖面 關係書類를 陸軍省에서 必要로 한다는 내용인 바, 送付하시기 바람.

絶影島 露國 炭庫用地內 日本人 所有地를  
買收한 내용 報告의 件

機密第1號

9月17日接受

當港 絶影島의 露國 石炭庫用 選定地 內 本邦人 所有의 土地 今般 陸軍

省에서 買收하게 될데 대하여 그 手續을 取하라는 뜻, 444千圓 添付하여 4月2日付 機密第7號로써 訓示하신 趣旨 了知하였음. 따라서 右 土地의 坪數를 實地 踏査한 뒤 買入 完了하고 그 始末別紙에 記하여 差進함. 查閱 바라옵고 또한 將次 該 土地에 대해 所有者로부터 陸軍大臣에게 獻納할 手續을 取하도록 來示되어 있으나 我官憲으로서 居留地外에 公然히 土地를 所有하는 것을 目下의 事情이 甚히 穩當하지 않음에 따라 當分間 그대 로 두고져 하며, 더욱이 各 所有者로부터 別紙 寫1號의 通證文을 徵收해 두 었음으로 時機에 따라 어떻게라도 할 수 있음.

右 陸軍省에 通知하여 주시옵기 이에 具甲함. 敬具

明治 31年 6月 6日

一等領事 伊集院彦吉

外務大臣男爵 西 德二郎 殿

## 一露人の 絶影島 日本人 所有地 買收企圖에 關한 請訓의 件

大隈外務大臣

第1號

絶影島 我炭庫 左右에 있는 當港 稅關雇 日本人 所有地 2千1百坪을 一時寄港의 獨逸人이라고 稱하는 비유루닉크(ビユルニツク)라는 者 當港 稅關吏 獨逸人을 통해 右 土地를 2千圓으로 買入할 것을 豫約하여 이미 手附金을 주고 더욱 그 附近의 韓人 地所도 買入할 希望이 있다는 것인바 右獨逸人은 本日 即時 相模丸으로 長崎로 向하고, 該地로부터 委細히 지시 를 한다는 約束이라고 뒤에 右 日本人이 申告함. 本人은 一時 全혀 金錢에 迷惑하여 右約束을 한 것이며, 또한 右獨逸人은 全혀 거짓이며 京城에 있는 露國人인 혐의가 있음. 京城에 問疑하고져 하나 當時 電信 不通으로 되지 못하고 또한 右 日本人에게는 그 不注意를 責하고 그 約束을 取消하

북 忠告하여 이를 承諾하므로써 本官은 될 수 있는 限 妨害하나, 右 事情에 따라 陸海軍 兩省의 意見이 있으면 併하여 어떤 訓示을 請함.

註, 8月10日付로 陸軍에서도 同意하니 阻止方法에 盡力하라는 回訓 있음.

## 絶影島 内 我 炭庫 附近의 邦人 梁田周吉

### 所有의 地所에 關한 件

機密第18號

絶影島 我 炭庫敷地의 左右에 接하여 當港 稅關雇 邦人 梁田周吉이란 者가 이미 3個所 4千餘坪의 土地를 韓人으로부터 買受하여 名儀는 依然 韓人으로 해두고 있던 바, 客月 26日 入港의 相模丸에 타고 있던 獨逸人이라 稱하는 「비류코푸」라는 者在 長崎 同國 商人 긴수부르구(ギンスブルク)라는 者의 代理者로서 當港 稅關雇 獨乙人으로 하여금 右 地所 買入할 것을 申込해 두고 即日 同人은 同船으로 浦汐港까지 가서 一昨 6日 재차 同船으로 寄港하여 右 梁田과 그 所有地 內의 我炭庫의 左方에 있는 地所 1千坪餘를 6千5百圓으로 賣買의 豫約을 하여 그 條件은 絶影島解放 後 地券交付가 될 때 代價의 全額을 拂渡하고, 그때까지는 4百圓을 手付金으로서 이미 梁田에게 주어, 결코 他에 賣渡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또한나 「머지 地所도 買受할 豫定이나, 價格에 조금 相談이 맺어지고 겸하여 本人이 長崎에 到着한 뒤 右 「긴수부르구」와 協議한 後 電報로써 取扱한다고 하고 헤어졌음. 또한 附近 韓人 地所도 買入하고자 한다 하여 그 周旋方法을 梁田 等에게 依頼해 둔 모양, 同日 右 買受 外人은 相模丸으로 出發後 梁田으로부터 처음으로 本官에게 그 顛末을 告함에 全體의 모양을 들건데 右 獨逸人이란 虛僞이며 露國人이 아닌가의 疑心이 있다. 右相模丸에는 肝付海軍少將이 乘船하고 있기 때문에 本官은 同 少將 餞送을 위해서 該船에 至하였던 바, 그때 同 少將의 談話에 客月 21日 獨逸人이라고 稱하여 仁川으로부터 少將과 同時에 相模丸에 乘込, 浦汐까지 가서 곧 歸住한 者 同船했으나 그는 獨逸人이 아니고 京城邊에 있는 露國人이 아

니나는 것이었으나 뒤에 梁田의 말과 符合하니 絶影島에서 겨우 數千坪의 地所를 商人으로서 6千餘圓의 大金을 내어 買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바, 右 商人이란 다른 目的에서인 것으로 推測됨. 더욱이 梁田이란 者は 전에 領事館 書記生으로 當館에 在勤한 일이 있으므로써 今日까지 間接으로 當館에 便利를 준 일도 있고, 또한 絶影島일은 먼저 부터 當港邦人 一般에 注意해 두고 있는 터이므로 右等의 事情을 눈치채지 못한 것도 아니나 大金을 爲해 一時 眩惑되어 本官은 勿論 其他에 숨겨 秘密히 相談하고 今日에 이르러 後日의 非難을 두려워 하여 申告한 것으로 생각 됨에 따라서 相談을 받은 當初에 무엇 때문에 本官에게 告지 않았는가 그 不注意한 짓을 充分히 詰責했더니 當人도 처음으로 깨달은 바 있어 眞實로 後悔하는 양으로 보여, 即時 長崎에 電報하여 契約을 取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契約 確定을 延長할 뜻을 相對便에 通知한다고 하기 때문에, 後悔하는 바 없도록 그 뜻을 들어 두었으나 이미 一應의 豫約이 成立되어 있으면 이것을 無效化하는 것은 相對方이 쉽게 承諾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이에 대하여 即日 京城 加藤辨理公使에게 電報로써 이러한 露國人京城邊에 마음 가는 것이 있는 有無를 問議하려 했으나 當國 一般 降雨 때문에 當時 電信不通으로 되어 있어 하지 못하고, 밤 7日 船便으로 問議해 두었음. 더욱이 本官으로서서는 할 수 있는데까지 妨害할 豫定이나 陸海軍 兩者의 意見도 있을 것이니 訓示를 받고져 하는 次第에 있음. 또한 桑田이란 者は 그 후 韓國稅關雇 獨逸人에게 契約 確定의 延期를 申入했다고 하니 그 所置 매우 困難하나, 지난 6日 買受人이 右 地所를 보았을 때 梁田의 地所는 海岸에 接하지 않고 그 越地에 日本人 所有에 屬하는 것이 있는 것을 發見하고 是等を 俯하면 매우 不便하므로써 반드시 이것을 買入할 것을 梁田에 依賴하여, 梁田도 그 뜻을 承諾하고 右 地所의 持主 等에게 熟議했다고함. 그러나 該地所의 一部는 昨年 露國이 炭庫數地를 借入하는데 대해서 加藤辨理公使로부터 內報가 있음에 따라 本官이 我 炭庫地附近을 檢査했을 때 海岸에 必要로 認定하는 土地 百餘坪이 있으므로 이를 買收시켜 그 轉賣를 禁쇄 두었는케, 今設 該地所 持主가 梁田의 相談

에 應하지 않음에 仲立한 獨逸人도 크게 困却하여 梁田으로부터 契約 取極의 延期를 申入함에 따라 同人도 海岸地의 買收가 되지않으면 梁田의 것만으로서는 買受人은 全部의 買收를 바라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여 不得已 右 趣旨를 電報했는데, 梁田은 一個所를 이미 買受하기로 되어 있음으로써 海岸의 地所는 될 수 있는 部分에 대해 周旋을 부탁한다는 返電이 음에 따라 새로 梁田으로부터 海岸의 地所는 이를 買收 할 수 없고 書信으로써 한다(報告)는 것을 電報한 것인데 今後에라도 本官의 指示에 따라 梁田은 어떻게 해도 좋다는 것임. 이 事情에 따라 萬若 其邊의 意見으로써 我石 炭庫에 接한 土地로서 어떤 目的인 것에 관계없이 外國人 所有로 歸해도 大差 없다고 하면, 商業上으로는 格別히 必要한 土地가 아니므로서 梁田의 希望에 마끼고져 함. 따라서 어떤 訓示가 있도록 이에 事情을 具하여 請訓함. 敬具

明治 31年 8月 8日

在釜山

一等領事 伊集院彦吉 (印)

外務大臣伯爵 大隈重信 殿

迫而 梁田으로 하여금 獨逸人이라 稱하는 「비루유코푸」의 身分을 調査케 했더니 京城에서 露語學校에서 語學의 教授를 하고 있고, 目下 夏期 休暇를 얻어 浦汐 및 日本 漫遊의 途中 長崎에 있는 獨逸 商人 「긴스보루구 (ギンスボルク)」란 者의 依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함,

本文電文 등은 右 「긴스보루구」와 往復하고 있음. 이에 申添함.

### 絶影島 梁田 所有地의 外國人關係落着의 件

機密第31號

12月7日接受

絶影島 內의 邦人 梁田 所有의 地所를 長崎 獨逸商人 「긴스보루구」로부터 當港 稅關雇 獨人 「아노」란 者에 대해 「土地不要」란 電報가 있음.

「아노」로 부터 梁田으로서 미리 本官에게 相談없이 外國人에게 賣渡하

는 등의 일이 없도록 일러 놓았음. 따라서 그 쪽의 意見에 의해 右土地를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客月 24日附 機密第30號로써 申述한 바와 같이 1坪約1圓以內로써 買收할 可能性이 있음. 右 報告의 뜻으로 이에 申進함

明治 31年 12月 2日

在釜山

一等領事 伊集院彦吉 印

外務次官 都策馨六 殿